



공동체 지원, 회복, 강화법

CARE 법 용어집¹

공동체 지원, 회복, 강화(CARE)법은 조현병 및 기타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, 주거 자원, 기타 서비스 등 자발적인 CARE 협약 또는 법원이 명령하는 CARE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특정 성인이 민사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

CARE 협약.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된 자발적인 합의 협약. CARE 협약은 피신청인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CARE 보험과 동일한 요소를 포함한다.

CARE 보험. [복지 및 공공시설법\(WIC\) 제5982조](#)에 따라 임상적으로 적절한 행동 건강 관리 및 안정제, 주거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별화되고 적절한 범위의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.

CARE 법 절차. CARE 법 시행을 위한 법원 및 관련 절차²

변호사. [WIC 제5980조](#)에 따라 제공되거나 피신청인이 선택하여 CARE 법 절차, CARE 협약, CARE 보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피신청인을 대리하는 변호사.

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. [WIC 제5607조](#)에 설명된 지역 정신 건강 서비스 책임자, 해당 지역 행동 건강 책임자 또는 두 사람 모두.

법원 명령에 의한 평가. [WIC 제5977조](#)에 따라 상급 법원이 명령한 평가.

졸업자 보험. CARE 프로그램 종료 시 당사자들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이며, 성공적인 법원 관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, 고급 정신 건강 의학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. 졸업자 보험은 피신청인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CARE 보험과 동일한 요소를 포함한다. 졸업자 보험은 지방 정부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법원이 강제할 수 없다.

노숙자 지원 인력.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충족되지 않을 필요를 평가하고, 정보, 서비스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돌봄 조정을 제공하는 사람.

인디언 의료기관. [인디언 의료 개선법 제4조\(25 U.S.C. Section.1603\)](#)에 규정된 대로 인디언 보건국, 인디언 부족, 부족 기관, 도시 인디언 기관(I/T/U)이 운영하는 의료 프로그램.

면허를 취득한 행동 건강 전문가. (1) [WIC 제4096\(j\)조](#)에 정의된 면허를 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 또는 (2) [WIC 제5751.2조](#)에 따라 관계 부처의 면허 요건 면제를 승인받은 사람.

신청인.³ CARE 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주체. 또한, 신청인이 해당 카운티의 행동건강관리국의 책임자 또는 그 지정인 이외의 [WIC 제5974조](#)에 명시된 사람인 경우, 신청인은 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, 최초 심리에서 법원은 절차가 제출된 카운티의 행동건강관리국의 책임자 또는 그 지정인을 신청인으로 대체해야 한다. 신청을 제기한 신청인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신청인의 이익 증진을 위해 [WIC 제5977\(b\)\(7\)\(A\)조](#)에 기술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.

고급 정신 건강 의학 지침. 의학적 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법적 문서로서, 정신질환자가 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사전에 문서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관리 능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.

피신청인. CARE 법 절차에 대한 신청의 대상자.

안정제. 환각, 망상, 무질서한 사고의 증상을 줄이기 위해 주로 항정신병약으로 구성되어 CARE 보험에 포함된 약물. 안정제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장기 작용 주사제로 투여될 수 있다. 안정제는 강제로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.

후원자. [제4장\(WIC 제5980조부터\)](#)에 따라 지정된 성인으로서, CARE 협약, CARE 보험, 졸업자 보장 계획 수립 등 CARE 법 절차에서 결정 이해, 결정, 의사소통, 실행, 행동을 지원한다. 후원자는 독립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.

약어

CARE 공동체 지원, 회복, 강화법

CalHHS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국

DHCS 보건복지과

JCC 캘리포니아주 법제사법위원회

MHSA 정신건강증진법

WIC 복지 및 공공시설법

¹ 모든 정의는 [WIC 제5971조](#)와 같다. 더 자세한 정보는 [CARE 법](#) 참조.

² 관련 절차에는 카운티 기관의 참여와 카운티 행동건강관리국의 임상 평가가 포함된다.

³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[캘리포니아주 법제사법위원회 CARE 법 웹사이트](#) 또는 [WIC 제5977\(b\)\(7\)\(A\)조](#) 참조.